

제404회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3월22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1)
2.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7)
3.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6)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1)
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8)
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5)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4)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59)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4)
1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6)
1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3)
1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0)
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3)
1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2)
1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17)
2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2)
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9)
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1)
2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1)
2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4)
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5)
2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7)
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8)
2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1)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1)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9)

3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8)
3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51)
3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2)
35.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9)
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0)
37.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6)
3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5)
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7)
4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8)
4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9)
4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6)
4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0)
4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7)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8)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1)
4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9)
4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3)
4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6)
5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5)
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7)
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7)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9)
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24)
5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8)
5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65)
5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1)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5)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8)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2)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6)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7)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9)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7)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0)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1)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3)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4)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6)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3)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4)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8)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5)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2)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5)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5)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1)
78.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3)
7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6)
8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6)
8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6)
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7)
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6)
8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712)
8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6)
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3)
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9)
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42)
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5)
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4)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3)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4)
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5)
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2)
95.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2)
96.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
97.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4)
9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1)
9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2)
10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5)
1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4)
1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4)
10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9)
104. 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1) 7
2.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7) 7
3.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6) 7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7

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1)	7
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8)	7
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5)	7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4)	8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59)	8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1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4)	8
1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6)	8
1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3)	8
1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0)	8
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3)	8
1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1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2)	8
1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17)	8
2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2)	12
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9)	12
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1)	12
2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1)	12
2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4)	12
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5)	13
2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7)	13
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8)	13
2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1)	13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1)	13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9)	13
3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8)	13
3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51)	13
3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2)	13
35.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9)	13
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0)	13
37.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6)	13
3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5)	13
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7)	13
4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8)	13
4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9)	13
4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6)	13

4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0)	13
4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7) ..	13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8)	13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1)	13
4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9) ..	13
4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3)	13
4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6)	13
5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5) ..	13
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7)	13
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7)	13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9)	13
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24)	13
5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8)	13
5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65)	13
5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1)	13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5)	13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8)	13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2)	13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6)	13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7)	13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9)	13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7)	13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0)	13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1)	14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3)	14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4)	14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6)	14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3)	14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4)	14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8)	14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5)	14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2)	14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5)	14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5)	14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1)	14
78.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93)	14
7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6)	14
8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6)	14
8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6) ..	14
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7)	14

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6)	14
8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712)	14
8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6)	14
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3)	14
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9)	14
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42)	14
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5)	14
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4)	14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3)	14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34)	14
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5)	14
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2)	14
95.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2)	14
96.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	14
97.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4)	14
9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1)	14
9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2)	14
10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5)	14
1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4)	14
1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24)	14
10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9)	14
104. 현안질의	14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장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야당이 지금 피켓을 다 저렇게 부착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발언 좀 드리고 회의 진행하면 어떨겠습니까?

○김교흥 위원 그냥 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이만희 간사님 발언하시지요.
3분 드리세요.

○이만희 위원 야당 위원님들 오늘 피켓을 다 붙여 놓으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미 다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우리가 그간에 있었던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안건이라든지 법안 상정 그리고 지난 13일 업무보고 때 기관장들의 이석으로 인해서 부족했던 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적인 회의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내치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켓을, 가는 데마다 다 저걸 하고 계시는데 그 뜻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회의와 무관한 그런 피켓은 때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도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장제원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민주당 쪽 의석에 태극기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었다고 방탄용으로 이렇게 회의장을 어지럽혀도 됩니까? 합의 없이 유인물을 부착하는 것을 방치하면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가 됩니까?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태극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됩니다. 특히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위한 방탄에 태극기가 이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교홍 간사님, 계속 붙이실 거지요?

○김교홍 위원 그럼요. 그냥 하시지요.

○문진석 위원 야당 때 생각해 봐요, 얼마나 했는지. 이견 또 태극기야.

○김웅 위원 우리는 지금 여당 노릇도 못 하고 있잖아요.

○조은희 위원 태극기만 두지 태극기 밑에 저게 뭐니까?

○이성만 위원 역사를 바로 아시라고!

○문진석 위원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 말이 틀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바로 하시지 왜 행안위에서 하십니까?

○문진석 위원 이 말만큼 훌륭한 말이 어디 있어요,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장제원 자,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앞으로 여야 간에 이런 쟁점이라든지 정치적 문제에 충돌이 있더라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가가 잘 운영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런 좋은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에서 정부조직법과 일명 지방시대법 통과를 여야 위원님들께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난번 회의 때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고 또 오늘은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속도감 있게 법안을 심사해 주셔서 또 합의해 주셔서 지방시대법이 통과가 됩니다.

여야 위원님들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야가 정당을 떠나서 이렇게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서로 접점을 좁혀 가는 노력을 한다면 이렇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 준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라든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발언의 기회를 좀 더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니다.

오늘 이렇게 지방시대법 합의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과 소위 위원님들 또 간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게 재난안전법입니다. 어떤 가치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다음 회의 때는 재난안전법 잘 통과시켜서 민생문제에 있어서 또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안전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현안질의, 야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현안질의는 여야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법률안 상정에 따라서 그 대체토론 시에 함께 진행하기로 했고 이런 점들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잘 모셨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덕분에 잘 모셨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061)

2.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7)

3.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6)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

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1)

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98)

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5)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534)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059)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04)

1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6)

1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3)

1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0)

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3)

1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1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92)

1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114817)

2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13분)

○위원장 장제원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교홍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교홍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 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 지방시대 중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되,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 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민간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각각 신설하고,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셋째,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기존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하는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사무기구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가급적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이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병훈 의원, 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급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청인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각 법률안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대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필요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와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

지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지되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심의사항과 절차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원 김교홍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법안심사2소위원장 이만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호선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거권이 없는 자 중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고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법 적용상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형의 집행유예’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형석 의원, 이명수 의원, 류성걸 의원, 서병수 의원,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 포함하고 선거운동 방법 등의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기 만료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동시이사장선거’로 정의하고 동시조합장선거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용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사·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에 해당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원 이만희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모두 법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법안심사1소위원회 아홉 분—김교홍 소위원장님, 송재호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조웅천 위원님, 천준호 위원님, 김용관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정우택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하여 실시하고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위원님이 먼저……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 광주 북구를 이형석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이형석 위원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법안, 정확히 말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이 되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당초에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건데 지금 여기 기회발전특구 있지 않습니까, 제2조 13호에 보면, 정의. 기회발전특구 정의에서 당초의 정부안은 ‘기회발전특구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안이 나오면서 지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이 부분이 삭제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정부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을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이런 입법 취지 또 비수도권의 반발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비수도권에 한정해서 정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내에서도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자체가 있음을 고려해서 이러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야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의 접경지역, 지금 아홉……

○**이형석 위원** 아니, 합의된 의견은 제가 알고요, 행안부 입장이 어떠냐 그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저희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수도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비수도권만큼이나 열악한 그런 지역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새로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수도권 내의 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형석 위원** 그렇다면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하실 때 23조 보시면, 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이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이형석 위원** 여기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체계상 이것을 일치시키려면 이 부분도 그렇게 갖어야지요, 단서조항에만 이렇게 넣지 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법안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를 수 있다 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들의 반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법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아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형석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차관님

생각이고요.

저는 법체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지방시대위원회 법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원**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위원장 장제원** 이형석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나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구소멸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하게 되면 지방만, 비수도권 지역만 얘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지방시대에 대한 논의만 하게끔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지방시대위원회에?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제원** 그러니까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그렇게 법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법률안 의결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형식은 제정안이나 그 실질은 4개의 법률을 일부개정하는 개정안인 점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안인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까.

먼저 법률안의 제명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조(목적)부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부터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2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부터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부터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부터 제44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부터 제62조(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까지 의견 있으신 위

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부터 제74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75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부터 제95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시행일)부터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제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7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0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현을 위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결된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원 한창섭 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명실상부하게 지방시대를 잘

이끄는 위원회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에 따라 후속사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2025년에 실시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순직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2)

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59)

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51)

2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1)

2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4)

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5)
2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7)
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68)
2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1)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31)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9)
3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8)
3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51)
3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2)
35.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9)
3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0)
37.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16)
3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55)
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7)
4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8)
4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9)
4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6)
4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0)
4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7)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8)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1)
4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59)
4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3)
4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46)
5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5)
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57)
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7)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9)
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24)
5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8)
5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65)
5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1)
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95)
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8)
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2)
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6)
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87)
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09)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7)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18730)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921)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003)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034)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106)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113)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124)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158)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165)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212)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225)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235)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241)
78.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893)
7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026)
8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76)
8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6)
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7)
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6)
8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712)
8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556)
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573)
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18659)
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742)
8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835)
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844)
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883)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934)
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975)
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152)
95.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252)
96.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3)
97.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4)
9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1)
9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2)
10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5)
1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4)
1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924)
10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9)
104. 현안질의

(14시34분)

○위원장 장제원 의사일정 제21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3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83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4항 현안질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두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0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의원**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 속에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제정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150만 강원도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11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어렵게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에 꼭 필요한,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보다 먼저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은 제주도의 경우 2006년 최초 수정 가결된 법안의 조항이 262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최소한의 조문만 담겨 23개 항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법안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전부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준용했습니다. 강원도의 4대 핵심규제 중 농업과 환경규제는 제주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련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강원도와 같이 접경지역과 산림 관련 규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는 규제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사, 산림, 농업, 환경, 4대 핵심규제 분야 면적은 2만 2564.6km²로 강원도의 전체 면적 대비 134.1%이며 이는 수도권의 1.9배, 경기도의 2.2배, 서울시의 37.3배 수준입니다.

안보를 위한 접경지역,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탄광지역,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산림과 수자원 보호지역의 중첩된 규제는 강원도가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는 영광도 주었지만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자 강원도가 낙후지역으로 도태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도가 해 왔던 역할을 포기하겠다, 모든 규제를 풀어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가 가져왔던 역할과 의무는 다하되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발전을 이뤄 보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의지이자 꿈입니다.

찬란한 발전을 거듭해 온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중첩된 규제로 몸살을 앓는 강원도가 있습니다. 빛나는 대한민국, 위대하고 비약적인 발전에는 강원도의 특별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부디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헤아려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하는 강원도가 도민의 큰 축하와 성원 속에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원** 허영 의원님, 간절한 제안설명이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가지고 여야 강원도 출신 의원님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강원도민의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좋은,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4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계기관이 다수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

관리주관기관 지정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4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공무원연금을 전액 정지하는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일부만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내의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듣는 동안 여야 위원님들, 웬만하면 팻말 좀 제거하시고 대체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검토보고 듣는 동안 위원님들의 자발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33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 등 총 34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승인 및 지방채의 발행을 위한 승인을 받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의 이행 지체나 불이행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이 축소될 수 있는 점, 지방채발행심의위원회가 한도초과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어느 범위까지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조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12개 개별 법률의 이의신청, 제척기간, 인허가 의제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규정 및 조문체계 등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본법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된 사항은 개별 법률에서 특별하게 규정할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여 현행을 유지하며, 개별 법률의 규정 외에는 행정기본법을 적용 또는 준용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기반의 통일되고 일관된 체계를 갖추려는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각조의 적용 또는 준용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전체적인 정비 방향의 일관성 고려와 함께 해당 조문 추가 시의 장단점 등 관련 연구 결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시도를 체류 범위로 하는 광역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인구

감소지역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적극 유입하고 가족 단위의 비자 발급을 통해 장기 체류 및 정주화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26조를 근거로 하여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 중이므로 시범사업 이후 인구감소지역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 규모 및 외국인재 조건, 국가별 및 업종별 도입 쿼터, 내국인 일자리 잠식 여부 및 잠식 방지를 위한 보완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역사증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장제원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규찬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중앙선관위, 소방청 소관 법률안 등 총 52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은 임시주거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재해로 인하여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 등이 복구 시까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임시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하층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찰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05년 5월 전부개정 이후 여러 차례의 일부개정령으로 인한 삭제 및 가지 조문을 정리하는 등 현행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현행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주체를 현행 시장 등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청으로 확대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주체를 현실화하는 등 입법 공백이나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관리전환·기부채납 등 일부 규정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 간 상충 여부,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육아휴직의 연령 및 학령요건을 현행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1세—초등학교 5학년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민간 분야의 육아휴직은 휴직 도중 연령 및 학령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라도 일정 기간 휴직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인 육아휴직의 연령 및 학령요건이 확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앙선관위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고 선거운동 시 해당 기준에 맞는 사진만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사진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그 기준을 정하되 명함 및 선거운동 소품 등에 사용되는 사진의 기준까지 정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방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국외 대형재난으로부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 기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장제원 박규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검토보고서가 의원실에 적어도 이틀 전에는 송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보니까 어저께 19시 26분에 들어온 것도 있어요. 이것 의원실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행정안전위원회에 법률안이 오면 그때부터 바로 검토 들어가세요. 그래 가지고 어떤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빨리 의원실로 줘야지 어저께 19시 이렇게 오면 의원이 어떻게 검토보고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그것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심도 있게 의결을 하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5시에 정개특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총장님은 이석을 하셔야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예.

○위원장 장제원 참고하셔서 가지고 대체토론하시고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순서대로 다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제원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조응천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장제원 3분 드리세요.

○조응천 위원 대체토론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조응천 위원 지난 일요일 날 MBC 뉴스에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국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걸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서,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가 말씀드리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제정·개정·폐지되었을 때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안위원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를 통틀어서 단 한 차례도 행정입법의 법률위반 검토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소관기관으로부터 총 593건의 시행령을 제출받았고 법제실의 검토 결과 상위법 취지와 내용에 불합치한 사례 6건, 법령 용어·형식·체계 등 미정비 사례 4건, 포괄적 재위임 사례 3건, 행정입법 부작위 사례 2건, 위임 근거 없는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사례 1건 등 총 16건의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국회법이 부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동안 16건의 시행령은 여전히 건재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행정·선거·안전·치안 등을 다루는 곳으로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소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시행령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빈번히 시행령 가지고 대립을 해 왔지만……

국회 입법지원단의 행정입법 검토자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행안위는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 제75조와 95조는 대통령, 총리, 행정각부의 장에게도 행정입법을 허용하면서도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그 권한을, 그 한계를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점을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국회는 고유한 입법권자로서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입법의 검토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즉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행정입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략적인 관점이 아니고 헌법정신에 의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건의드립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우리 위원회는 행정입법 검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전 상임위에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국회가 의무를 방기하여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원 조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간사님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대체토론과 현안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울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안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해식 위원 국수본부장, 검찰 출신이 옳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아직은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해식 위원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 8월 달에 청장님 인사청문회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해식 위원 그때 이미 정순신 내정설이 있었어요. 사실은 6월 달에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 제가 물었는데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저 개인뿐만 아니고 저희 경찰 조직원들이 그와 같은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주 호기롭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이 왔지요, 그리고 인사 참사가 일어났고.

지금 후임자로 또 검사 출신이 거론되고 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 가지는 조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

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답변할 때 단순히 검사 출신……

○이해식 위원 속기록에서 제가 따서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저도 봤습니다.

검사 출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와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해치는 걸 한다 그러면 저나 조직원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다……

○이해식 위원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경찰의 조직 이기주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게 되면 마땅히 기소를 해야 될 사람을 기소하지 않고 봐주거나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탈탈 털고 압수 수색하고 수사를 해서 억지 기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획수사, 별건수사, 범죄사실 사전 공표 이런 것들이 자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저는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되면 검사 동일체에서 나아가 아예 검경동일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추천권자로서 일정 부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관련 의견들을 제시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날 총경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찰국 반대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했던 55명이 아주 처절한 보복 인사를 당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제가 정리를 했지요, 이렇게.

총 55명 중에 교육, 퇴직자 등 인사발령 대상이 아닌 사람 15명을 제외하고 남은 40명 중에 27명, 무려 67.5%가 복수직급제에 해당되는 보복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58개 복수직급제 중에서 절반은 신규 임용자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은 총경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신규 승진자 25명보다 더 많은 27명을 총경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 배치했습니다. 27명 중에 22명이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인사 발령됐고 나머지 5명도 교무과 계장 등으로 발령됐습니다. 형사과장, 수사과장 하던 분들이 112종합상황실장, 상황팀장 등으로 사실상 강등이 됐습니다.

심지어 같이 총경회의에 참석한 충북의 경우는 112치안종합상황실장으로 1명이 발령이 나고 나머지 2명은 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나서 서로를 겹끄럽게 만드는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인사였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인사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가로 해서 경찰청장께서 얻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경찰청장님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을까요? 경찰 조직을 이렇게 내부적인 신뢰의 추락 그리고 좌절감, 원한, 복수심 이런 것을 안기는 인사를 해도 됩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총경 전보 인사권자를 가진 청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식 위원 1분만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하루 전인 3월 15일 날 일본 덴소의 자회사인 한국와이퍼 안산공장에 700여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됐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PPT 한번 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8명의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한 분은 경찰에게 맞고 떠밀려서 갈비뼈가 세 대나 부러졌습니다.

일본 덴소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작년 10월부터 노동법 위반 혐의로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었고 지난 1월 30일에는 한국와이퍼가 법인 청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대량해고를 통보를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아 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와이퍼 노사 간의 고용안정협약에 보면 노동자들과 동의 없이는 해고, 청산, 매각 등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려진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 하루 전에 이렇게 경찰병력을 투입해야 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선물 보따리로 가지고 간 것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그 부분도, 이것을 한일 정상회담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

해서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거는 일선 서에서 자체 판단으로 물론 진행된 것이기는 한데 제가 결과보고를 받아 보니 당시 이게 청산절차 진행 중인 회사였고요. 청산금지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는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고 그 이전부터 노사 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112 신고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일반적인 경력 관리기준으로 배치를 한 거지 이게 무슨 한일 정상회담 하루 전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으로 경력을 배치해서 과잉진압을 했다, 저는 이거에는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답변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장제원 마이크를 좀 드리시지요, 무선 마이크 같은 거.

나오실래요?

○이채익 위원 제가 질의를 쪽 하고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방안 발표는 최악에 빠진 한일 관계를 회복해서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발전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국민과 야당의 비판은 물론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참으로 고독하고 또 나라의 앞날을 내다본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내몬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정부 출범 직후 한일 간에 합의한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고 2018년에는 김명수 대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양국 관계가 파탄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런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굴종외교라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외교경색을 풀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소상하게 먼저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해결 문제는 정서와 법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피해자와 유족의 정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생존해 계신 피해 당사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2000명 정도 생존해 계시고 피해자 유족들조차 평균 연령이 80살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로 배상을 받게 되는 15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에게도 향후 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는 그야말로 제삼자 변제, 기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징용재단에 출연금을 낼 국내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에서도 징용재단에 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것도 친일입니까?

물론 청구권 수혜 기업은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강제로 요구할 권리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께서는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대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당시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의장은 양국 정부와 기업, 국민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배상하자며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문희상 의원 법안으로 2019년 12월 18일 날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 법안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족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가적 차원

처우를 강화하여 올곧은 역사 인식을 통해서 올바른 미래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고 또 당연한 대통령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의 문희상법 제정도 이제 우리 국회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약 2000명 정도의 강제징용 피해자가 생존해 계시고 피해자 유족들의 평균 연령이 80살 이상 넘은 만큼 가슴 속에 맺힌 한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원 이사장님,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는데 질의응답 방식이 5분 내에 질의응답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참고하셔 가지고 이사장님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지금 질문이 한 6~7개 나왔는데 전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권의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할 만한 입장이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아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아까 2000명이라고 그랬는데 1200명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존자, 열다섯 명 중에 생존자는 보도가 됐듯이 지금 현재 세 분만이 생존해 있고 나머지 열두 분은 법률적으로 권한을 수계받은, 인수인계받은 자녀분들이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그런 사건들이 현재 똑같은 케이스로 67건에 한 11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3월 6일 해법이 적용이 된다면,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상해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신고를 받았을 때 21만 8000명이 강제동원의 피해자로서 등록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바로 제2의 문희상 법안 얘기가 나오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현재 문희상 법안의 요지는 결국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과 국민의 성금을 받아서, 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일 경우에 기억·화해·미래재단에서 기금을 만들고 거기서 돈을 받을 경우에는 화해로 간주해서 일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제소를 안 한 사람은 이 돈을 받을 경우 제소권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것이 요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지금 제2의 문화상 법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조금 진전된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장제원 추가로 하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벌써 8분, 9분 됐거든요.

○이채익 위원 아니, 그래도……

○위원장 장제원 아니, 선배님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답변이 지금 벌써 3분이 됐는데 이해해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전임 위원장님, 제가 1분 배려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추가로 나중에 하시려면 또 하십시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경찰청장님, 국가경찰위원회가 2월에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잖아요. 이 시행령 개정안이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서울 백범로, 이태원로, 다산로 그리고 녹사평대로, 서빙고로 등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맞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용혜인 위원 이게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다가 그렇지는 않고 말씀, 언급하신 중에 일부가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를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맞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일부는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교통 불편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뭔가요, 경찰이?

○경찰청장 윤희근 일정 통행속도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용혜인 위원 관련 규정이 있나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건 법령까지는 아니고요.

○용혜인 위원 그렇지요. 결국에는 해당 관서장이 자의로, 임의적으로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러니까 자의, 임의라는 말씀은 좀 아니시고요.

○용혜인 위원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누군가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12월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용혜인 위원 그리고 1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현재의 판결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에 이것들이 다 막히게 되니까 12조에 대한 시행령을 바꿔서 교통을 핑계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막겠다라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가 통과시킨 겁니다.

지난 11월에도 해당 내용을 논의한 바가 있지요, 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윤희근 예.

○용혜인 위원 그런데 똑같은 안이었는데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달 사이에 현재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집시법 11조를 적용할 수 없게 되니까 똑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3개월 만에 통과를 시킨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통과시킨 회의에서조차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도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법원의 판결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시행령이고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 현재의 판결을 비껴가서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주요 도로 지정 기준은 규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 규정도 없이 대통령실 인근 도로를 지정하신 거예요. 현재와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사항을 입법을 통하지도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경찰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그리고 아주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항상 자유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자유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회·시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시행령을 경찰에서 만든 겁니다.

저는 이런 막가파식 시행령 통치를 국회가 바로잡지 못한다면 입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웅천 위원님께서 국회법 98조의2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해당 사안을 우리 상임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집시법 11조 개정안, 우리 행안위에서 통과시킨 것 역시 법사위에서 위헌 우려 때문에 계류 중이고 이번 집시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취지에서 저는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고 보는데요. 행안위에서 이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해서 의견을 정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께 관련된 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회의 때 건의사항을 임의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제출하셨는데 저는 이게 임의 문서 사태의 법안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언뜻 보면 문제가 있었으니까 고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익이 없는 상향 입법에 불과한 건데 참사 당시에 행안부가 스스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었다라는 걸 실토하고도 중수본 설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이 문제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이었으면 달랠 거다라는 취지의 개정안을 지금 제출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그렇지 않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러면 뭘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현재 재난안전법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의 별표 양식으로 있는 것을 좀 더 명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률로 상향해서……

○옹혜인 위원 시행령에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당시에 지정했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거거나, 아니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수본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더군다나 책임 면피를 위해서 개악하려는 부분까지 슬쩍 집어넣습니다. 중수본 설치 조건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슬쩍 바꿔 봤어요. 이게 국정조사 마지막 날 청문회에서 장관이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바로 그 지점을 탄핵심판 소추 중인 지금 쑥 고쳐 버리겠다는 의도, 이 의도 너무 투명하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이 부분 지적하고 있는데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중수본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 아마추어도 재난 대응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 놔더니 이 개정안이 다시 개인에게 그리고 무능한 사람에게 이런 재량을 열어 줬을 때 어떤 참사가 발생할지 저는 정말 굉장히 크게 우려스럽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원인 조사도 행정안전부에서 제대로 안 해 놓고 그 시간에 어떻게든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방탄할 논리를 만들어 내고 관련된 법 개정안 만들어 내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정말 국회가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행안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할 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환 위원 오영환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얼마 전 가정 내 부친상 치르심에

깊은 조의를 전하고요.

○경찰청장 윤희근 감사합니다.

○오영환 위원 청장님,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정보를 경찰이 살펴봤다 이런 언론보도 보셨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봤습니다.

○오영환 위원 경찰은 변명이 참,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이태원역장 수사를 위해서 참사 당일 피해자들이 이태원역 이용했는지 보기 위해서 교통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교통카드 내역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역도 제출됐고 확인했지요, 경찰이?

○경찰청장 윤희근 그 부분은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영환 위원 아니, 제출됐고 확인된 것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그 많은 450건 중에 2건이 있었습니다.

○오영환 위원 영장청구 자체가, 영장신청 자체가 그랬지요. 지난 11월 특수본에서 희생자들의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내역 전부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그렇지 않고 저희가 요청한 것은 교통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오영환 위원 오죽하면 검찰이 당시에 2차 피해와 인권침해 우려로 반려까지 했었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1차 때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차원은 아니었고요.

○오영환 위원 그런데 두 달 뒤에는 그 카드 사용내역도 당초에는 4시간을 신청을 했다가 하루 온종일로 늘렸습니다. 또 대상자도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생존자 250명까지 추가했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그것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오영환 위원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오영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수사상 그런 조치는 사전에 당사자에 고지를 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오영환 위원 범죄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렇지 않지요.

○오영환 위원 참사 생존자 중 한 분께서는 이 거래내역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검찰이 뭔가 나에 대해서도 마약과 관련된 이런 수사 하는 것 아닌가, 참 정말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은행 통보서상의 제공 사유에 ‘영장’ 이렇게 돼 있으니 정말 그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것도 죄스러운데 정말 범죄자로 취급당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 경찰과 검찰이 2차 가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절차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오영환 위원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입출금 내역 전부 다 몰래 살펴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알고 인정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저희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규정과 절차에 따랐고요.

○오영환 위원 경찰청장님,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어쨌든 가족들께서 그런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일정 부분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영환 위원 국가수사본부장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당초에 왜 설치됐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권력기관의 수사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분리해서 독립 설치한 게 국가수사본부 아닙니까, 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예, 말씀 취지가 일정 부분 맞습니다.

○오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을 넣는 게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애초에 법을 제정할 때부터……

○오영환 위원 오히려 검찰에 의한 경찰 수사에 대한 직접통제가,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거라고는 모든 국민이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국수본부장 자리에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했다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지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런 검사 출신을 경찰청장이 직접 추천을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조직 구성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검찰의 경찰 장악이 현실화됐다, 경찰 우습게 본다 이렇게 반응이 실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장님, 이런 예상 못 하셨습니까? 당초에 조직으로부터 동의를 구할 자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동의 구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면요, 이게 검사라 안 된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영환 위원 마저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경찰국 사태 당시에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사태 때도, 청장은 그때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은 경찰청장은 대통령실, 권력의 살아 있는 마리오네트냐, 꼭두각시냐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저는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교하신 일정 부분은 청장으로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영환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장제원 예.

○오영환 위원 정순진 전 검사는 결국 자녀의 학폭 논란으로 국민 분노 유발하고 또 허위공문서작성,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까지 당하면서 결국 28시간 만에 낙마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추천자인 경찰청장이 안타깝다 이런 표현만 하셨는데요. 국민에게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

○오영환 위원 의향 없으십니까?

저는 이게 사과로 될 일도 아니고,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실패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75%가 이번 참사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검증 책임자 문책해

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사정보관리단, 투명한 검증 하겠다 이렇게 자화자찬했던 법무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국민들이 답변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입니다. 추천자이기도 하고 세평까지 작성했다고 경찰청이 시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님, 이쯤 되면 사과가 아니라 정말 이 조직의 자존심까지 깃밟은 것을 포함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셔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사퇴할 의향 없으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여러 번 말씀드린 바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경찰청장님께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청장님, 국수본 설치, 기존의 경찰법이 언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까? 2020년이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2021년부터 시행이 됐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되고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국수본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룡조직이 되는 경찰권의 비대함을 막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 인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봤고 검찰 등, 법대 교수, 변호사 등…… 그 당시에 이른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팀장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국수본은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알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이 지금 뒤바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국수본부장이라는 자리에 걸맞은 역량과 경륜이라든지 지휘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경찰 출신이다 검찰 출신이다 판사 출신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국수본 인선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며칠 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경찰청을 방문해서 반드시 내부 인사로 국수본부장을 임명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런 의견은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대내외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때 당시에 이 법을 제정했던 다수당 의원님들이 지금 와서 내부 인사로 국한해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법 제정할 당시의 취지가 무산되고 뒤바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맞는 경륜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거지 출신을 전제하고 선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능력이나 또 지위,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추어서 하시는 게 맞고……

경찰청장께서 추천하시고 행안부장관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맞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청장님께서 내부 인사로 하겠다고 건의를 드렸다 이 말도 맞습니까, 보도가 나왔던데?

○**경찰청장 윤희근** 최근에 경찰 내부 분위기라든지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의견들이 다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경찰법 제16조에 보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둔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한다, 임기는 2년.

그다음에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판사·검사직에서 1년, 국가기관 등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맞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장제원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박성민 위원** 여기에 해당하면 누구라도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으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경찰청장님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리려고 했더니 국수본부장 임명과 관련돼서, 인사 참사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저도 몇 가지 확인 좀 드릴게요.

청장님, 지난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신설할 때 경찰 인사가 행안부장관을 패싱하고 법에 어긋나게,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찰국을 신설한다…… 그때 청장님 옆에 앉아 계셨으니까 들으셨지요,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를 하면 밀실 인사고 행안부장관이 하면 밀실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국수본부장 정순신 사태와 관련돼서 국수본부장에 지원하신 이분들 한번 보실게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 모 총경입니다. 이상민 장관하고 같이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들러리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또 장 모 씨, 경무관, 이분은 지금 59세입니다. 곧 퇴직할 분이예요.

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역량과 경륜이 수사에 있어서 특출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국수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다, 동의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께서 질문을

드렸습시다마는 정순신, 지난해부터 국수본부장으로 올 것이다 이런 소문이 항간에 돌았고 경찰청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보고를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보고받으신 적 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둘러리 세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이런 인사가 밑실 인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형석 위원 가타부타 말씀하기 어렵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형석 위원 청장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 이런 의미인데……

다음 PPT 한번 봐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아니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 중에 1명이 청장님에게 지시하셨을 거예요, 정순신으로 국수본부장을 임명해라.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 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형석 위원 아닙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형석 위원 그러면 지금도, 청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셨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가 마지막 판단을 했습니다.

○이형석 위원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아까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정순신 인사와 관련해서?

○경찰청장 윤희근 그 후보자 3명 중에 종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형석 위원 정순신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 말씀인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상대적으로 그 후보자 중에는 낫겠다 해서 제가……

○이형석 위원 청장님, 부친상 당하고 오셔서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습시다만 경찰의 자존심 누가 지킬 겁니까? 류삼영 총경 혼자 지킬 겁니까?

청장님 이제 아닌 것은 아니더라고 이야기하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형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게 경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검경 수사준칙 개정, 이것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경찰청 의견도 내셨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형석 위원 이것 이대로 진행된다면 지난번 경찰청 내에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와 관련돼서 한동훈 장관이 유도했던 대로 똑같은, 자칫하면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찰의 의견 제시할 계획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저희의 의견은 이미 행안부로 드렸고요, 지금 행안부와 법무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차관님, 이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관련돼서 행안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 이상민 장관처럼 법무부 의견에 동의해서 경찰청 의견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가실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서 행안부가 정확히 행안부 입장을 견지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지금 법무부하고 경찰청 그리고 검찰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경찰청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이게 법무부 안대로 가게 되면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사종결권 모든 게 다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행안부의 입장을 정확히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몇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쟁점이 있는데요. 상당 부분 경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안부에서도……

○이형석 위원 상당 부분이 아니고, 행안부는 경찰의 입장을 대변해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 하고 있고……

○이형석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유족 대리인 지정과 관련해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미비해서 대리인 지정을 받아 주지 않고 규정을 새로 개정해서 시행령을 내놓았는데 기존에 시행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람 기준을 강화시켰습니까? 왜 그렇지요? 뭐 때문에, 이것도 누구 지시예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지시는 특별히 없었고요.

20년도에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유고 시에 사후에 대리인을 지정해서 열람하는 조항이 있는데 일단 여러 유족 중에서 대리인을 특정하지 않고, 그런 게 불분명했고요. 열람 범위도 어디까지 열람을 할 수 있는지 불투명해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형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개정안을 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15년이 지나서 열람할 수 있게끔 한 취지는 이 열람 내용물을 가지고 뭔가 확인할 내용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위원장대리 이만희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형석 위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기록물들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 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현직 대통령과 유고 시 사후에 대통령지정기록물 범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형석 위원 이것은 다시 논의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시갑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 윤희근 청장님, 부친상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작년 인사청문회 때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청장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과 자질은 무엇이나라고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시기를……

PPT 좀 넣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보이는 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조하셨고요. 또 소통의 리더십과 열린 마음도 필요하다 그렇게 서면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맞습니다.

○조응천 위원 지금도 이렇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응천 위원 평가를 못 하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전국총경회의 참석자들의 거꾸로 가는 인사, 총경 인사 후에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겠습니다.

PPT 좀 올려 주세요.

죽 한번 보십시오.

‘보복성 인사다, 물갈이다, 입에 재갈을 물린다, 처량하다’, 분노와 자조 섞인 조롱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게 열린 마음 또 소통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통솔한 결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정확히 반대의 모습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은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청장님께서 어떤 청장으로 남고 기억되시기를 원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저 임기 2년 채우고 퇴임하시는 그런 청장 되시는 게 꿈은 아니실 겁니다.

2003년 임기제 도입 이후에 경찰청장 열두 분 중 여덟 분이 도중 하차를 했습니다.

PPT 좀 넣어 주세요.

과거 청장님들, 어떻게 바뀌셨나 죽 봤습니다.

조현오 청장님, 참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수원 토막살인사건 때 112신고센터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으로 전격 사의를 하셨습니다. 이성환 청장,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유병언 사건 부실수사 책임을 지고 사퇴하셨고요. 김창룡 청장 사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김기용 청장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를 하셨지요. 주로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여론 악화나 정권교체기 여권과의 갈등 등으로 지금 청장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사유로 사의를 표명해 왔습니다. 임명권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지요, 또 조직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온 청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발생한 일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총경회의 소집에는 정계로 응수하시고 법무부의 일방적 수사준칙 개정에 경찰의 의견이 묵살당했습니다. 백선아홉 분의 목숨을 앗아 간 이태원 참사에 책임 회피로 일관하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순신 국수본부장 인사 실패까지, 이 모든 일이 불과 7개월 동안 발생했습니다.

특히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국조 때 이태원 참사 당시 행선지 알리지 않고 지방 내려가서 음주하고 잠들어서 제대로 연락 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말에는 저도 술 마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밝혀 드려야 되느냐’라고 되물었을 때 저는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여쭙지 않았습시다, 국민들께서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청장님께서 경찰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에 부합하는 일이나라고 저는 여쭙습니다.

청장님, 국수본부장 막중한 위치 맞지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립성과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청장님께서서는 후보자 시절부터 현장과 진심을 담아 소통하겠다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수본부장 임명하니까 내부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즉 한번 보십시오.

‘수사지휘 거점조직을 두려는 것이다, 노비제도가 완성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 소통을 충분히 하셨으면, 경찰관들의 뜻이 뭔지 아셨으면 과연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라고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PPT.

인사 검증 실패,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작년 22년 6월 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6월 달에 이미 정순신이라는 이름이……

1분만 더 주십시오.

정순신이라는 이름이 국수본부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아셨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6월에 그런 게……

○조응천 위원 작년 6월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미 하마평이 한 10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저도 청와대에서 검증 해 봤지만 경찰정보가끔 오류가 있지만 이것 못 잡아냈다는 것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계속 고민하겠다, 늘 고민하고 있다’.

청장님, 아직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전임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중하고 심각한 사건 사고, 내부의 불신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제 실천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직 재정비하고 국민 신뢰 회복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청장님, 입장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응천 위원 말씀해 주세요. 답변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계속 고민하시겠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위원장대리 이만희 다음은 부산 수영구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봉민 위원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야당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회의원정수 50명 증원에 대해 가지고,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선관위 사무총장님으로서 또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정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선거구제를 어떤 걸 택할 건지 또 의원정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건지는 국민의 입장이란지 정치현실 또 외국, 해외사례 이런 것을……

○전봉민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국민적 인식이 국회의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권역별 비례제 포함해서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OECD에 비해서 의원 수가 적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봉민 위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당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의원 수가 적은 편이지요, 따져 봤을 때.

그리고 솔직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지요. 그때 민주당에서, 지금 야당이지요.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혼란만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차피 나머지 부분들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충분히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한다고 추진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이 PPT, 사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폐쇄형일 때는 정당명만 적으면 되는데 개방형일 때는 일일이 다, 지금 네덜란드 기준인데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 사무총장님께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전 재외투표가 가능한지 또 개표 시에 당선자가 언제 나올지 또 현재 개표하는 시간 동안에 이 업무를 어떻게 다 봐야 될지,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지금 선거제도가 바뀌면 그에 맞는 선거관리 시스템이 딱 뒤따라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연동형이 도입되면서 개방형으로 갔을 때는 예전과 확 달라졌기 때문에 우선 유권자부터 투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후보자 수에 따라서, 기존의 장비들이 현행 선거제도에 맞게끔 세팅되어 있는데……

○전봉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표로 한번 보여 드렸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예, 새로운 제도가 바뀌면 투표·개표 관리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하여튼 그 정도 하고, 제가 행안부에게 아까……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시고……

지원재단 이사장님.

○위원장대리 이만희 예, 나오셨습니다.

○전봉민 위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일본…… 방한을 하고 저는 많은 성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과표는 표로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수출규제 해제, 서틀외교 복원,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출 등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일장기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짜 뉴스도 이렇게 퍼뜨리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진 한번 보시지요.

원래 이런 사진인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장기에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것 가짜 뉴스로 표명이 됐지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솔직히 이번에 제삼자 하는 방식에 있어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찬성하는 유가족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외교부와 제가 열다섯 분의 원고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는 중인데……

○전봉민 위원 해서, 지금 현재 찬성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그건 밝히는 걸 좀, 밝히지 못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봉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수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상당수는 있는데 숫자라든가 이것은 좀……

○**전봉민 위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은 세 분 확실합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그렇습니다.

○**전봉민 위원** 열다섯 분 중에서 나머지 열두 분은 아까 말씀대로 발표를 지금 못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일부 아직 못 만나 본 분도 계십니다.

○**전봉민 위원** 몇 분 정도 못 만났습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지금 현재 절반 정도 만나 뵈었습니다.

○**전봉민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피해자분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이 한 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구를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 위원** 윤희근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TV 방송을 보니까 JMS 실상 고발한 다큐멘터리 방영 때문에 국민들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셨나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저는 종교 교리가 옳고 그르다를 떠나 가지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교주인 정명석 씨의 죄를 덮기 위해서 수사에 개입했다든지 또는 피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하는 등의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검사 또는 경찰 신분의 JMS 신도들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장님 동의하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저도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김철민 위원**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특정 종교를 믿는 것이 사회적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불

법을 자행할 때는 이를, 불법을 위해서 신도가 공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또는 불법·위법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동의하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동의합니다.

○**김철민 위원** 최근 정명석씨 교도소에 있는 동안 실질적으로 교단을 이끌었던 정조은과 관련해서 사실상 정명석씨 저지른 성범죄의 공범이라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요. 실제로 10년 전 정명석 재판 당시에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정조은이 피해 여성들을 정명석씨에게 데려가는 등 성범죄를 방조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수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짚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정조은에 대한 수사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저희도 자체 논의와 동시에 청장 특별지휘로 해서 수사팀도 보강을 하고 또 수사팀장의 직급도 높여서 강제수사 절차를 포함해서 좀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 위원** 두 번째요, 다른 건데요. 초기에 JMS 수사를 맡았던 충남 금산경찰서에도 JMS 신도가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자유이고 영역이지만 그 종교를 위해서 위법한 업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에 있는 JMS 신도로 인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거나 또 관련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수사에 매진해 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그 부분은 분명하게 유념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휘를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저희 당 위원들께서 청장님의 여러 가지 거취 문제 또 그 후의 문제 가지고 많은 질타가 있었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지금 전체 경찰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감사합니다.

○**김철민 위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저번에 추경예산 때 파출소와 지구대장들의 업무추진비 인상을 요청했었고 그때 저희 여야 위원들께서 100% 동의해 주셔서 가지고 인상했습니다. 그당시에 저도 노력했고 또 청장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가지고 여야 간사 또 여야의 소위원들께도 설명드리고 가지고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기재부가 이것 반대했지요. 반대해 가지고 결국은 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혀 인상이 안 되는 것보다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금액을 마치 파출소장이나 지구대장의 인건비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분명히 인건비가 아니지요, 이것은요?

○**경찰청장 윤희근** 맞습니다.

○**김철민 위원** 업무추진비이고 기관운영비 아닙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김철민 위원** 매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네 파출소가, 인구가 4만 명인데 동장은 80만 원 받는 데 이 양반은 8만 원 받습니다. 8만 원만 가지고 어떻게 기관 운영이 되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지금 경찰들한테 신뢰가 떨어진 것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2024년도 예산에 반드시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조금 떨어져 있는 청장의 위상을 올려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위원님, 전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도와주시기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셨고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방금 그와 같은 이유로 일부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저는 기재위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기재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올해에 내년도 예산만큼은 반드시 편성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일정 정도 동의가 되었으니까 이 문제 끝까지 직접 관철시켜 주십시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청장인 저부터 나서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상 위원**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입니다.

경찰청장께 국가수사본부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는 경찰분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경찰청장 윤희근** 대략 한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최기상 위원** 지금 치안정감이시고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최기상 위원** 지금 경찰에 치안정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7명이 있습니다, 국수본부장을 포함해서.

○**최기상 위원** 그 아래 단계인 치안감은 몇 분이신가요, 대강?

○**경찰청장 윤희근** 정확히는 제가…… 하지만 한 30명 정도 됩니다.

○**최기상 위원** 남구준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부인사셨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치안감이었다가 치안정감 승진인사가 되셨을까요, 아니면 수평이동 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이 됐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당시 치안감으로서 경남경찰청장을 하다가 승진을 하면서 국수본부장을 왔습니다.

○**최기상 위원** 국가수사본부장직을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니까, 남 본부장께서는. 어떠셨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걸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일반적인 평가가 있으실 것 아닌가요. 무난하게 하셨다, 잘하셨다……

○**경찰청장 윤희근** 초대 본부장으로서 새로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끈 그와 같은 충분한 공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최기상 위원** 지금 치안감 서른 분 중에 수사업무의 역량이 있다, 이렇게 전문성이 있다는 분들도 어느 정도 평가가 됩니까? 숫자가 파악이 되나요, 어떠신가요?

○**경찰청장 윤희근** 충분히 있습니다, 복수로. 수사경찰 경력 30년 중에 대부분을 수사에서 종사를 했다거나 할 수 있는 국장급 또는 치안정감급이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면 혹시 치안감이나 치안정감직을 수행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공직에 안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국가수사본부장을 수행할 만한 분들도 좀 계실까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파악전대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결격사유가 뭐냐 하면 60세라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안감 또는 치안감으로 이미 퇴직하고 또 3년의 기간이 경과돼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면 이미 그분들은 만 60세가 넘습니다.

○**최기상 위원** 예, 그렇군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를 굳이 검사 출신이 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도 많고 저도 같은 생각이려 여쭙봤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부에서 발탁할 때랑 외부에서 뽑을 때랑 절차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외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일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최소한 한 50일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부인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승진인사 또는 수평이동으로 그냥 임명권자 임명 절차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최기상 위원** 외부인사의 경우에는 가령 종합심사위원회 심사도 거치고 하게 돼 있던데 내부인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나 임명권자의 결단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혹여 내부인사 중에 이번에 추천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하시겠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말씀드린 대로 국수본부장이라는 자리에 걸맞은 어떤 경력, 역량, 리더십 이런 것을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상 위원**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나 경찰수사권에 관한 확고한 철학이 있는 분이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도 한편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감사합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장께……

검사들이 지금 외부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숫

자가 많다는 지적이 최근에 많습니다. 법무부에 파견돼 있는 검사도 수가 많은데 그 외에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검사가 얼마 전 기준으로 50명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 숫자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밖에 많이 나가 있는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혹시 이렇게 파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인사혁신처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갑자기 말씀하셔서 가지고, 저희가 그 현황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기상 위원** 관여하신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겠네요, 인사혁신처에서.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예,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관련해서 따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직무대행께도 여쭙보겠습니다.

행안부도 정부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시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데 수사를 담당해야 될 검사들이 이렇게 타 기관, 특히 외교부나 재외공관에도 많이 나가 있단 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별도정원이라는 형태로……

○**최기상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게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그에 관한 절차에 관여를 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저희들은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 부처인데요. 별도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정원과 똑같이 관련 부처에 파견 보내는 방식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무부에는 상당수의 검사들이 파견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그리고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이 법무부가, 검사들이 지금 다른 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내용이

다른 부처에서 외부로 파견 나가 있는 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계세요? 적절한지, 아니면 과한지, 부족한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다른 부처의 일반직 공무원이 파견 가는 것보다는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숫자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비교해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 내부적으로 별도·비별도라고 구분하는데요. 비별도정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별도로 정식 정원하고 똑같이 관리하는 그런 수준은 저희들이 재외공관이라든지 또 관계부처 공식 정원으로 가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저희 의원실에서 따로 추가적인 의견을 좀 구할 테니까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갑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웅 위원** 경찰청장님, 어른 잘 모셨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감사합니다.

○**김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사십구제도 안 지난 상주 이렇게 불러서 현안질의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좀 죄송하고요. 반가에서는 잘 안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오영환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 헬러윈 참사 관련해서 강제수사 하는 부분…… 강제수사는 진짜 보충성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 잘 안 하다가 검찰에서도 그 특수수사 분야가 큰 곤경에 처했다라는 것,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강제수사는 진짜 되도록이면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 TF라고 민주당에서 만든 것 혹시 들어 보셨어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김웅 위원** 지난 2월 28일 날 정순신 아들 방지범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PPT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법안 내용은 학교폭력을 대학 진학에 반영하고 학교폭력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 있는데 잘 모르시겠지요? 바로 2014년 9월 1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서면으로 사과한 것까지도 생기부에서 삭제를 하고 가해 사실은 아예 수사나 재판에 반영을 못 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지요. 민주당 TF의 발표하고는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서면사과조차 기록할 수 없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극악한 학교폭력 가해자 옹호법안이지요.

이 법안 발의하신 박홍근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이고 공동발의자가 안민석·서영교·김현미·남인순 의원님 등입니다. 아마 박홍근 의원님이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네요.

민주당에서 만든 정순신 TF는 민사고·서울대 찾아가서 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기부에서 삭제했느냐라고 따지고 서울대 가서는 대학 입시에 왜 가해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질타했다는데 서면사과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에서 갑자기 가해 사실을 삭제했다고 따지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민주당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여러 의원님들이 나와서 2019년 9월 3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주홍글씨가 된다. 여기 기자회견장에서도 역시 박홍근 원내대표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과거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민주당 정순신 TF는 주홍글씨 새기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2012년 10월 22일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하여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형과도 같은 일이다.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사형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다는 뜻이지요.

2012년 10월 17일 유은혜 의원은 국회에서 가해학생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학생들 인권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나라고 질타를 합니다. 그러더니 문재인 정부 때 교육부장관이 돼서 결국 2019년도에 학교폭력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 폐지하는 것까지 추진을 했었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저렇게 온갖 교육감과 전교조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2012년 8월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위헌이고 위법이고 교육적 견지에 어긋나고 기본권 침해하고……

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대하신 김상곤은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교육부장관이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주호 장관 탄핵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생기부에 넣는다고. 이때부터 아마 민주당은 장관 탄핵을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생기부에 학교폭력 기재한다고 장관 탄핵하겠다고 나선 당이 지금 와서 학교폭력을 생기부에 넣겠다 발표하면 이번에는 그러면 민주당 탄핵해야 되는 겁니까? 좀 의문이 듭니다.

저도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1분까지는 아니고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1분 하십시오, 천천히.

○김웅 위원 과거의 민주당과 현재의 민주당이 싸워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저는 정말 흥미진진하고요. 어찌 됐든 학교폭력의 엄중함에 대해서 이제서야 제대로 인식을 하신 것 같아서 우리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2012년도에 학교폭력 가해자만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정당하나라고 외쳤었고 가해학생 부모에 대해서도 방지교육을 시키겠다고 교과부가 의견 내놓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연좌제라고 반대했었습니다. 지금 국수본부장의 직계비속의 학교폭력 문제를 문제삼는 것을 보니까 그때의 민주당과 참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과거 민주당의 입장과 지금 변화된 민주당 정순신 TF의 입장 중에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웅 위원 아마 국민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홍 위원 질의하기 전에, 심규선 이사장님 좀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저는 이번의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은 과거를 묻어 줄 테니 잘 좀 봐 달라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과라는 것은 사과를 받는 측, 피해자 측에서 그게 사과라고 인정될 때 그 사과가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해 놓고도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하고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얘기하고 강제징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독도에 대해서도 계속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159명의 유가족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수없이 했지요, 각종 종교행사에서. 그러나 유가족들은 지금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한 건 사과가 아닌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60% 넘는 국민들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아니다’, 일본은 57%가 ‘한일 정상회담 잘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교라는 게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어 와야지, 그게 국익외교 아닙니까? 이것은 정쟁을 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여당·야당이 정쟁할 게 아니에요, 이건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지난번 13일 날 저희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제삼자 변제가 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내가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그렇습니다.

○김교홍 위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았다, 내가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셀프 배상안은 내가 생각한 거다, 내가 취임 이후로 이 부분을 안보실과 외교부에서 계속 진행해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전달받을 만한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김교흥 위원** 아니, 전달을 안 받았는데 이사장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정관 변경할 수 있어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제가 정관 변경을 해서 행안부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김교흥 위원** 그러면 행안부장관대행님, 장관대행께서도 ‘행안부에서 주도하지 않았고 재단이 먼저 요구했고 이에 승인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그동안 민관협의회라든지 토론을 거쳐서 아마 그렇게 재단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대통령은 본인이 외교부하고 안보실하고 계속 협의해서 했다 그러고 지금 재단은 아니라 그러고 차관도 아니라 그러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저기, 위원님……

○**김교흥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정말 내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사장님, 2011년도에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이 법적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협상 과정에서 합의문이 나왔잖아요. 그때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 강제성이 인정된다’ 이런 것까지 본인들이 합의문에 넣었어요. 민간이 한 것도 다 인정했는데 정부가 한 것들은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제삼자 변제안만 가지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엇그저께 기시다 총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이 일본 가서, 돈 벌기 위해서 간 겁니까? 이게 인식이 지금 잘 안 돼 있거든.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제삼자 변제를 재단에서 하는데 돈을 안 받겠다고 그러면 법원에 공탁할 것 아니에요. 맞지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현재 공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교흥 위원** 아니, 만약에 끝까지 안 받겠다고…… 지금 어느 피해자는 이러잖아요. ‘대통령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못 받겠다,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제 입장은, 원고들을 찾아서 새로운 해법을 설명하는 게 제 입장이라고 봅니다.

○**김교흥 위원** 아니, 여하간 만일 돈 안 받겠다고 그러면 공탁을 걸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그것은 나중에……

○**김교흥 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전혀 생각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김교흥 위원** 그러면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교흥 위원** 답답하네, 답답해.

들어가세요.

1분만 더 주세요.

저는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윤희근 청장님, 오늘 들어 보니까 조금 답답해요, 저는.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보복 인사를 아까 우리 위원이 얘기하니까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청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인사를?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55명 참석자 중에 퇴직·공로연수 빼면, 약간의 숫자는 틀려요. 왜,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이게 여러 경로에서 취합을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47명 전원을 지방으로 귀양 보냈어요, 이번 인사에. 그리고 112상황팀장 43명 중, 이게 총경급이에요. 이번에 경찰국 만들면서 시혜성으로 중복 인사한다고 해서 했던 112상황팀장 43명 중 28명, 65%가 서장회의 참석자들이에요, 총경회의.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개월 만에 또 16명을 보냈어요.

권력은 말이에요, 한정돼 있어. 그러나 경찰청장은 14만 경찰의 수장이야. 경찰의 명예를 지켜줘야지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본인이 해 놓고 왜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아까 위원님이 총경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취지는 알지만 위원님이 해석하신 그것에 100%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청장으로서 충분히 제 가슴에 새기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아니, 본인이 실행을 해 놓고 가슴에 새기고 조직을 운영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경찰청장 윤희근** 지난번 총경 인사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몇 명 몇 명 그 부분은 이 14만이라는 큰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총경 인사를, 보직 인사를 단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개인적인 역량·자질뿐만 아니고 대내외적인 평가 등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국수본부장, 이번에 정순신 임명하는 것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경찰들이 과연 청장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안타까워서 그런다고, 경찰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경찰청장 윤희근** 지적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수본부장 사안과 총경 인사 사안은 또 분명히 사안이 다르다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심규선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사장님, 제가 알기로 이사장님은 상당히 일본의, 한일관계의 전문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신문사의 도쿄 특파원을 한 5년 정도 지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지금 여기 2005년도 8월 26일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관련된, 민관공동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동안에 이번 삼자배상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여러 가지, 그 전에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보상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왕왕 나와 가지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두 번 보상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65년도에 체결된 한일 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외교문서들이 40년 세월이 흘러 가지고 비밀이 해제되면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는 과정에서 과연 그 협정 문건 내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국민들 앞에 소상히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이셨고요. 여기의 공동 위원장이 이해찬 국무총리가 있었고 정부위원으로는 9개 부처의 장관들을 포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수석이셨어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혹시 이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의 골격은 사할린, 위안부, 원폭 문제는 1965년도에 논의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일본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만희 위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은 개인재산권, 국가가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그게 8개 항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상자금 중에 상당한 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될 정부로서의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65년도에 협상을 할 때 일본은 강제동원금을 개인한테 나눠 주겠다고 했으나 우리 정부는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나눠 주겠다고 한 대목이 있어서 결국은 받아 가지고 제대로 나눠 주지 않고 적게 나눠 줬다고 들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제가 법안을 좀 살펴봤어요, 그때 당시에 만든 것. 일부에서는 이게 우리 당대표, 김기현 대표가 이걸 지적을 하고 정부가 나눠 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 그때 당시에 그분들한테 위로금 성격으로 준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걸 가짜뉴스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안 내용을 보면 4조의 위로금도 지금이 되지만 제5조에 미수금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무슨 얘기냐 하면 강제동원 되신 분들이 일본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돈들을 미처 못 받은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그냥 단순한 위로금의 성격이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PPT에서 보시다시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 한 6500억 상당의 정부 재정이 지급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2018년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거지요.

어쨌든 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 또 우리 사법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모두 존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지난 사오 년 간에 아주 극심한 한일 간의 대립이 있었고 이번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결단이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분들이 문희상 안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한번 읽어 봤는데, 그것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

분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의 주체, 기능, 자원 마련, 비교적 다 유사합니다. 다만 이걸 특별법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지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문희상 법안과 지금 3월 6일 정부의 해법은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낸 돈으로서 대위변제를 한다는 면에서는 골격이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재단으로 하느냐가 차이점입니다.

법으로 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강제성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것들이 강한테 아무래도 재단에서 한다면 그 부분이 좀 모자르지 않느냐 아마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런 결정을 하면서 많은 정치적 공격도 예상이 될 것이고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다고 충분히 인식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 우리 국민이 북한 핵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는 과정에서 국가의 안보라든지 또 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이 어려운 결단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게 서로 진짜, 야당 위원님도 동의하셨지만 정쟁 여부를 떠나서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이걸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저로서는 불가능한 최선보다는 가능한 차선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이만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심규선 이사장님, 강제동원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만 위원 재판받으신 분은 열다섯 분이신데 이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강제동원됐다고 믿으십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저는 믿습니다.

○**이성만 위원** 믿지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이성만 위원** 그런데 일본에서 외무장관은 강제동원 자체가 없었다 또 일본 유엔 담당 대사는 한반도에서 온 민간인 노동자, 스스로 온 노동자 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성만 위원** 옳지 않은 주장이지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아마 외교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으로……

○**이성만 위원** 옳지 않은 주장이지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이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가 갖고 옳은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일본 사람들이 잘못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돈 문제는 돈 문제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일본 사람의 잘못된 점을 하나도 지적 못 한 거지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성만 위원** 지적 못 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아니, 질문을 하셨다면……

○**이성만 위원** 결국 이 얘기는 굴종외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것은 본인 생각이시고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성만 위원** 일단은 이걸 명백하게 이사장님도 당연히 일본이 강제징용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일본이 전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만 위원** 그렇지요. 바꿔야지요. 그러니까 현 정부 또 현 대통령 잘 못 풀고 있는 거지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그

것하고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만 위원**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상을 당하셨는데 하여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으로는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명할 수 있는데 보통 조직에서 조직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내부로서 임명할 것인가 또 외부로서 임명할 것인가는 장단점이 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성만 위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때로는 내부적인 의견을 존중하고 사기 진작이나 또는 내부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내부에서 진급하는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조직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면 케이스가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국가수사본부장 같은 경우에 경찰 내에 마땅한 인물이 없다 또는 경찰 내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에 적합자가 없어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성만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해 조직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 이것 좀 환골탈태해야 돼, 이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못 한다고 보니까 외부에서 보통 임명을 합니다.

청장님 보시기에 경찰청은 좀 바뀌어야 된다, 새롭게 변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성만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해주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래서 지난 초대 때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부승진 케이스로 본부장을 했다고 보고요.

○**이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경찰청이 쇄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성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찰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바뀌기 위해서 외부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앉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는

위원님 지적……

○이성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한 경우에 해당 조직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내부적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만 위원 그렇지 않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이성만 위원 지금 보면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검찰이 더 문제 아닙니까? 60명 이상 국가 주요 요직 다 잡고 앉아 있으면서 모든 국가사 문제를 검사 출신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검찰이 와서 앉게 되면, 검사가 와서 앉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런 이기적인 행태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

○이성만 위원 그래서 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국가수사본부장 이번에 새로 임명하실 때는……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새로 임명하실 때는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찰조직을 생각하고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사람을 천거해 주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아주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에 최적의 인선이 어떤 건지를 저도 청장으로서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성만 위원 내가 그 말 믿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두 시간 반이 흐르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한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몇 분 계시면 한 40분 정도 될 건데 좀 쉬시다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냥 갈까요?

○조은희 위원 그냥 갑시다.

○위원장 장제원 그냥 가실래요?

○조은희 위원 예, 빨리 끝내 주세요.

○위원장 장제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갑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심규선 이사장님께 좀 여쭙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 또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런 기초하에 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92억 원,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을 통해서 6500억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2018년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양국 간의 합의와 그런 걸 달리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그런 논리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판결로 배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은희 위원 왜입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배상을 명령받은 두 기업이 65년도 합의에 근거해서 자신이 지불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그렇지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조은희 위원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이후 문제인 정부는 뭐 했습니까, 5년 동안? 일본이 배상을 거부할 때, 양국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은 이유가 뭐니까? 일본이 안 하겠다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일본 기업이 안 하겠다 했을 때 국

제 간에 문제가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갔습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

○**조은희 위원** 답을 못 하시는데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고 정말 먼 안 서게 3개월 만에, 석 달 만에 이를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를 파국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사장님, 저는 한일관계가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면서 역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예, 동의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외교 구상을 가시화하고 물건을 채워 나가는 과정에 있고 이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성만 위원님 컴퓨터 앞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말을 대신 ‘편향적인 죽창가를 팔아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면탈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과거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 놓으면서 새로운 미래의 문도 함께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장님, PPT 화면을 잠깐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6일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경찰이 수사 도중 목에 흉기를 찔리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은 상태에서 혼자서 검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혼자서 퇴근하고 혼자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같은 수사팀원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퇴근하고 관

련 팀장은 핸드폰만 보고 철저하게 동료 경찰을 외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PPT 화면 두 번째입니다. 부상 입은 경찰이, 본인이 올리신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쳤는데 혼자 병원을 찾아와야 하고…… 딸 입학식도 못 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관련 사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찰의 기강이 바로 세워지고 또 다른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PT 3쪽을 보시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좀 어이없다 생각하는 건데요. 블라인드 게시글 관련 대응팀 구성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시행 중이라는 건데요, 경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이런 걸 올렸는지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경찰 내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외면한 사건에 대해서 왜 외면하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걸 올렸냐, 이렇게 감사하는 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답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위원장 장제원** 답변하십시오, 충분하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우선 공무수행 중에 이런 부상을 당한 건에 대해서는 정말 청장으로서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동료, 팀장, 이 사람들이 이 글에서처럼 전적으로 이렇게 외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바로 진상 확인을 했고요.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현장경찰관이 참여하는 아주 투명하고 공개적인 진상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엄정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러나 다만 청장으로서, 저희 경찰조직이 이렇게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무질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진상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것을 행안위라든지 이런 공개적인 데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윤희근 청장님, 먼저 위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총경회의 참석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경찰청에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도 똑같은 말씀 하셨고 또 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경찰조직 내부에서 누구보다도, 사실은 너무 많은 동료 직원들이 이견 아니 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저도 충분히 그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장으로서는 사실은 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한 판단이었고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역사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그게 역사적인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총경에서 경무관 승진하려면 거쳐야 될 보직이 있고 기간이 있고 또 대개…… 그간의 경찰 인사시스템의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인사로 인해서, 꼭 거기 회의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 다른 인사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청장님이 보시기에, 청장님이 인사권자로서 ‘보직인사는 내 책임이니까 내 책임하에 했다’, 물론 충분히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경찰조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경찰청장 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사가 저희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800명 정도 가까운 총경에 대한 보직인사였고요. 그다음에 복수직급이라는 자리가 생기면서 총경이 갈 수 있는 보직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이고요. 제 임기 내에 그런 모든 걸 다 종합적으

로 고려해서 또 다음 인사에도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번 인사가 청장님 뜻이 반영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원칙과 소신을 지키시는 청장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청장님의 거취 문제나 이런 걸 떠나서 청장님이 하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8월 한참 그럴 때 사실은 류삼영 총경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제가 일체 징계 책임도 묻지 않았고요. 사실은 직무명령 위반 실제로 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랬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청장이 되자마자 첫 인사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 임기 안에 종합적인 걸 다 고려해서 룹텀을 보고 제가 인사를 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국가수사본부장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순신 사태 이후에 지금 외부 공모냐 아니면 내부 임용이나를 가지고 사실 관심이 경찰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도 보면, 여기 경찰법 제16조에 보면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조건이거든요. 이 법의 취지를 본다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내부 임용을 전제로 해 놓고 외부는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앞서 변화와 혁신이니 쇄신이니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겠지요,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데 이번 정순신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사실 경찰청에서 검증이 잘못됐고 또 감사의, 어떻게 보면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쪽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임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내부 임용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청장님의 원칙과 소신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한 한 달 전으로 돌아가자

면 사실은 그때 처음 정순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공모절차를 진행할 때 당시에는 우리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종결권을 포함한 이런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한 역량과 경륜을 가진 인사가 국수본부장을 하는 게 더 맞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찰 내부에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승진을 시키든 보직 이동을 시키든지 해서 국수본부장을 하는 게 맞다 하는 두 가지 의견이 다 팽팽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초대 수사본부장을 내부 출신으로서 이미 해서 조직 안정을 꾀한 측면이 있었다면 2년이 지난 지금으로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는 거기에 저는 동의를 했고요.

다만 이제 한 달이 지난 지금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또 그때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가능하면 가급적 내부에서 역량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원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판 위원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차관님, 지난 행안위 전체 때 경찰청 내에 사기정보분석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사기방지 기본법을 이야기하고, 특히 행안부와 경찰청의 협조가 잘 안 되는데 협조 좀 잘하는 시스템을 강구해라 한 거 기억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판 위원 정선용 실장님 오셨나요?

○행정안전부정부혁신조직실장 정선용 예.

○김용판 위원 그런데 보고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고 전혀 없거든요. 그냥 그때뿐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조만간에 일정을 잡아서 아마 방문해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판 위원 저는 끝까지 하기 때문에 말로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는 악센트가 높아집니다.

경찰청장께서 내일 제가 주최하고 같이 주관하

는 사기방지 기본법 공청회 하는데 알고 있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판 위원 내일 참석합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용판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세요, 설명할 것 제대로 설명을 하고.

○경찰청장 윤희근 예.

○김용판 위원 이거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정부 조직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같이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차관님께서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용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정순신 사태에 관련해서, 학교폭력이 다시 재조명돼서 그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이 지금 매년 증가되고 있는 건 경찰청장 알고 있나요?

○경찰청장 윤희근 코로나 시기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김용판 위원 매년 보니까 2020년도 2만 8000건에서 3만 7000, 4만 3000, 매년 1만 건씩 느는 걸로 나오는데 물론 단속이 강화되거나 또는 실제로 늘어나거나, 둘 다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하지요, 늘어난 이유가?

○경찰청장 윤희근 예.

○김용판 위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중에, 이 SPO가 학교담당경찰관 아닙니까, 1명당 2개 학교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알고 있나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판 위원 그만큼 학교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권해서 후보 때 말씀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이 왜 안 된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학교폭력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 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단속보다는 예방 쪽에 중점을 뒀다 되지 않을까요?

○김용판 위원 글썄요, 다 좋은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실제로 서울경찰청장 할 때 실천했고 그때 진단한 걸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 볼게요.

첫째로 학교 내에는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방구라는 의식이 만연돼 있다, 둘째는 이걸 제대로 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경찰인지 교육부인지 학교인지. 그리고 셋째는 같은 맥락으로 경찰청과…… 왜냐하면 폭력은, 마지막에 법 집행은 경찰이 하기 때문에…… 예방 업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부, 학교 측하고 공조 내지 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저는 이걸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진단으로 제가 LA 경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LA 경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경찰청장 윤희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판 위원 그 당시에 서울경찰청 직원하고 서울교육청 직원하고 LA 경찰에 출장 같이 갔어요.

뭐냐 하면 LA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 경찰관 서너 명이 기본적으로 상주합니다. 경찰관이 상주함으로 인해서 경찰관은 교장의 특별참모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우려고 그러면 학교장이 의지를 가져야 되고 학교장이 그냥 안 되니까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관을 특별참모로 여기는 문화가 사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그때 학교폭력은 획기적으로 없어진다 그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경찰청장 때 문용린 교육감하고 했어요, 그 양반이 공감해서. 본 위원이 떠날 무렵에 한 59개 학교쯤 있다가 떠나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호지부지되어 버리고 지금 없습니다.

여기서 경찰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예방을 해야 되고, 학교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세상에 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아파트 문제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안 내려고 그러지요, 아파트 값 떨어질까 싶어서. 똑같은 심리입니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경찰과 교육부, 학교 측에서 제대로 공조 내지 협업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 관심 가지고 해 보세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김용판 위원 경찰청 내에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맞습니다.

○김용판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4월 27일 날 시행되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예.

○김용판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소방청의 의용소방대에 비해서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자율방범대 간에 괴리가 너무 많다,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1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 경찰서별 자율방범연합대 회의 때 서장이 참석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80%가 참석 안 해요. 지방청장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한 예가 없어요.

그걸 지시해 가지고 참석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예, 그건 제가 검토해서 업무지시할 수 있도록……

○김용판 위원 그러면 확실히 하도록 하세요.

같이 가는 가족의 문화가 되고, 그래야 제대로 통제도 되고 함께 가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통제 플러스 존중하는 문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함께 됩니까? 존중하는 문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제원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 일어나세요. 뒤로 가요. 뒤로 가세요.

사무총장 복귀하세요.

아니, 제가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 봅니다.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일어서세요! 나가세요, 발언대로.

국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선관위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사무차장, 옆에 오세요! 총장 옆에 오세요. 누구 멧대로 거기 앉아요!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예.

○위원장 장제원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누구 허락 받고 이석을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무슨 오

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제원 무슨 오해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제가 메모 받기를……

○위원장 장제원 누가 메모했어요? 일어나세요!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이석해도 된다고 메모 돌린 사람 일어나세요.

누구예요? 누구한테 메모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알아보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진상 파악하세요. 누구예요! 그 뒤에 선 사람이예요? 누구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 김지현 선관위 기획재정과장 김지현입니다.

○위원장 장제원 기획재정과장이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 김지현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장제원 들으세요!

위원장 허가도 없이 위원들이 발언하는 도중에 이석한다는 메모를……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 김지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제원 들어! 어디서 배워 먹은 거예요! 국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총장, 앉으세요.

기획재정관, 똑바로 서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 김지현 기획재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장제원 과장, 무슨 권한으로 이석을 하게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 김지현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죄송이 아니라 여기 국회 직원 중에 누가 이석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 김지현 저희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원장 장제원 담당 직원 누구세요? 일어나세요. 담당 직원 누구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 김지현 아닙니다. 담당 직원은 잘 보냈지만 제가 메시지를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제원 어떻게 읽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 김지현 40분 정도에 위원장님께서 이석을……

○위원장 장제원 40분 정도에 이석하라는 얘기를 누가 적어 줬어요?

일어나세요. 그 직원 누구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 김지현 제가 전달받았고요.

○위원장 장제원 아니, 가만있으세요.

누구입니까? 과장한테 쪽지 전달한 사람 누구예요? 기립하세요!

저 기획재정관 이름이 뭐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 김지현 김지현입니다.

○위원장 장제원 앞으로 국회 출입 안 됩니다. 알았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 김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자리 복귀하세요, 차장.

회의 끝날 때까지 총장은 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지난주 경찰청 업무보고 때 김수환 정보국장이 정순신 변호사 세평 수집을 했다고 인정을 했고 그 세평 수집의 주요 내용은 업무능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청장님께서 정순신을 추천할 당시에 정순신 변호사가 과거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마지막 최종 직급이 차장검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준호 위원 검사장으로는 승진 못 한 건 알고 계셨겠네요?

○경찰청장 윤희근 차장검사니까 검사장이 안 된 거겠지요.

○천준호 위원 승진 대상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런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천준호 위원 능력을 평가하면서 왜 승진이 거기서 마감됐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한 일 아닙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알기로 아마 검찰도 그 기수의 한 10% 정도가 검사장이 될 텐데요. 안 되는 90%가 왜 안 됐는지까지 사실 저희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천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능력과 관련된 세평을 수집한다고 하면 당연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승진심사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 자체, 승진이 안 됐다는 것도 몰랐고 승진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것도 업무능력과도 연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천준호 위원** 업무능력의 핵심이 반영되는 게 승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데서 핵심은 이 사람이 승진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왜 승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그것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경찰청장 윤희근** 글썬요, 제가 한번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천준호 위원**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걸 몰랐던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미 내정한 인사였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애써 모른 척했던 건지 의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글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검사장이 안 됐는지 여기까지는 저희가 아마 파악 대상으로 생각을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에서 제대로 된 세평 수집, 검증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 사실상 봐주기 검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7일 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대통령실과 의견교환을 통해서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이야기하셨고요. 3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대통령실의 의견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또 다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누구와 의견교환을 하신 겁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저희가 국수본부장 선발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공모부터 마지막 추천할 때까지를 당연히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쪽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협의하는 거고요.

○**천준호 위원** 누구랑 했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그건……

○**천준호 위원** 이원모 인사비서관입니까, 복두규 인사기획관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그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준호 위원** 두 분 중에 1명인 건 맞습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글썬, 따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직접 소통하셨습니다, 의견교환을?

○**경찰청장 윤희근** 제가 하기도 하고 우리 인사담당 간부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천준호 위원** 대통령실의 누군가와 의사교환을 했다는 것이 왜 비밀입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인사라인에 있는 분과 의견교환을 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걸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이런 검증 절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만 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랑 소통하셨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그걸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맞는지는 한번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뭐 두려운 일 있으십니까? 왜 밝히지 못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아니요,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지금까지 전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천준호 위원** 청장님,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미 세상에는 정순신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됐다고 하는 풍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추천하시기 전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청장님께서 초기단계부터 정순신을 염두에 두고 인사 절차를 진행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서도 투명

성이 더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요도로를 지정해서 집시법 운영을 새롭게 하시려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관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한하시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주요도로를 이유로 해서 집회를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집회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절히 관리해서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찰청장 윤희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지금 집회·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 그다음에 지금 용산 이태원로를 포함한 주요도로를 개정하면서 새로 주요도로를 추가한 것은 지난 14년에 집시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 10년간 개정이 없었고요. 그 사이에 도로교통 상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여건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전됐고 당연히 그쪽이 교통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고려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걸 반영해서 주요도로를 일부는 삭제, 일부는 추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집시법과 관련해서는, 집시법의 주요 헌법기관들은 사무실 그리고 또 관저가 다 일정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대통령실은 관저와 대통령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특수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관저에 대통령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겠다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게 문언적으로 안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준호 위원** 법원이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지요.

○**경찰청장 윤희근** 그렇지요. 문언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도 여타의 헌법기관과 같이 일정한 집회·시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자……

○**천준호 위원** 주요도로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주요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도로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일반 국민들의 편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도로를 바꾼 거고 필요하다 그러면 주요도로를 근거로 일정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천준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 2016년에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가 있을 때 당시에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해서 집회·시위를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그런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요도로 집회를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려고 하면 또다시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가지고 시행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그건 한번 저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거고요.

제가 한번 어느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일에,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다수 인원이 전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저희는 한번 그걸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
○**위원장 장제원** 마지막으로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한창섭 차관께 제주 4·3을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제주 4·3은 정부가 행한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1947년 3월 1일 2만 5000에서 3만 명, 그 당시 제주도 인구가 한 25만 명 될 때예요, 한 10분의 1 정도가 초등학교에 모여서 단선 반대, 단독정부 수립, 통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진행이 되다가 제주도에 있는 남로당의 무장봉기가 48년 4월 3일 날 있었고요. 54년 9월 21일까지 진행된 일련의 사건인데 그건 시점으로 이야기한 거고 그 성격은 단선 반대, 단독정부 수립, 통일에 대한 제주도민의 염원을 이념의 탓에 썩워서 일어난

무고한 양민의 대량학살 희생 사건이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른바 공산폭동으로 해서 몰린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은 판결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가 직권재심에 의해서 심판을 다시 하는,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송재호 위원 그래서 지금 군사재판에 의한 무고한 수형인은 한 2530명 정도 되고요. 일반재판도 합해서 3000여 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그 중의 69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아서 복권된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송재호 위원 그리고 희생자, 학살과 희생된 인원은 학자들에 따라서 많게는 25만 명 인구 중에 대략 8만 명이 희생됐다, 3분의 1이 희생된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이상이 반 세기 이상 동안 연좌제에 묶여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건이고, 그래서 국가도 국립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송재호 위원 그런 일련의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10년 이상 경우회, 다시 말하면 군경과 유족, 4·3 유족회가 합동으로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화해와 용서의 모델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제주도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 이게 엄청 걸렸어요.

제가 굳이 과거사위원장이 아니고 행안부차관께 여쭙는 것은, 이걸 가지고 법무부의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하는 인원이 9명밖에 안 돼요. 이 티오는 우리 행안부가 늘려 줘야 되는데, 늘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호 위원 그다음 트라우마센터는 지금 광주하고 제주에 국립으로 짓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민 거의 전체가 이게 트라우마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이 희생이 돼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연좌제에 묶여서 고통을 받을까 봐 대한민국 여군에 지원해서 여군으로 복무하다가 퇴임해서 지금은 자기 남편을 희생자로 신고를 안 해요, 트라우마 때문에. 신고했다가 또다시 연좌제에 얹힐까 봐서, 이렇게 병들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센터 인원이 열댓 명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걸 줄이면…… 차관님, 이것은 좀 넓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인력과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해서 아마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 그러니까 합동수행단 인원을 늘려 주시고 트라우마센터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 상황은 또 보고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한창섭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재호 위원 김광동 위원장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예.

○송재호 위원 아직도 위원장으로서 공산폭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주 4·3사건은……

○송재호 위원 아니, 그냥 공산폭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량의 양민학살 사건이다라는 점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발발이, 어떻게 발생했느냐와 관련해서 남로당의 무장봉기로 시작되었다, 이 표현은 4·3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의견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장제원 송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추가질의, 이형석 위원님 신청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3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김광동 위원장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예.

○이형석 위원 지금 진화위 위원 9명 중에 일곱분이 공식이시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예, 맞습니다.

○이형석 위원 왜 임명 안 하고 있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국회 동의를 거치면 일반적으로 약 5~6주에 걸친 대통령실에서의 인사 검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 지금 이제봉 후보자 낙마했는데 한 분 낙마했다고……

6명은 임명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저는 국회 동의를 거치면 임명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형석 위원 이제봉 후보자는 왜 낙마했어요? 왜 낙마했다고 보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래요?

이분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시고 옹호하셨는데, 이제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안부 관련해서 망언을 일삼았고 또 특히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류석춘 교수를 옹호하는 성명을 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성명을. 이런 것 때문에 이제봉 후보자는 낙마를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인사들을 진화위 위원장 내지는 위원에 임명하는 이게 지금 저는 국민들의 굉장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님, 지난번에 5·18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 ‘80년 5월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고 그 견해를 견지하시는 겁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만 당시 취지는 역사왜곡 처벌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형석 위원 역사왜곡 처벌법을 핑계 대지 마

시고 본인의 견해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제가 조금……

○이형석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80년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도 보시냐고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제 발언이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의 맥락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면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석 위원 아니, 북한군이 아니고 북한이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형석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자꾸 지금,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저는 북한군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걸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아닙니다. 제 말씀은 북한……

○이형석 위원 북한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옹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형석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북한의 개입 가능성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제 발언이 북한군의 개입까지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석 위원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그렇습니다.

○이형석 위원 그러면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이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북한이 개입했다라는 확인되는 사실은 아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형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본인의 견해를 갖는 결정적인 증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사건, 선거라든지 아니면……

○이형석 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관여해 왔기 때문에……

○이형석 위원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김광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된 사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논의하시지요.

.....

○위원장 장제원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각 소관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소위원들께서는 소관 법률안을 밀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해식 위원님, 송재호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정우택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서면답변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에 선관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장 허락 없이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위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누가 어떤 쪽지를 누구에게 전달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 이름까지 포함해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관기관에서는 이런 부분,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이석하는 이런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와 현안질의를 위해 출석해 주신 각 기관장과 기관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김 교 홍	김 용 판	김 우	김 철 민
문 진 석	박 성 민	송 재 호	오 영 환
용 혜 인	이 만 회	이 성 만	이 채 익
이 해 식	이 형 석	임 호 선	장 제 원
전 봉 민	정 우 택	조 은 희	조 응 천
천 준 호	최 기 상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허 영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 상 조
전 문 위 원	박 규 찬
전 문 위 원	신 문 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 관 직 무 대 행	한 창 섭
정부혁신조직실장	정 선 용
인 사 혁 신 처 장	김 승 호
경 찰 청 장	윤 희 근
소방청장직무대리	남 화 영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김 광 동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사장	심 규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 무 총 장	박 찬 진
사 무 차 장	송 봉 섭